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수정)*

(1998. 12. 29. 제9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통과, 2004. 8. 28.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2005. 10. 27.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수정, 2005. 10. 27. 주석령(主席令) 제43호로 공포, 2006. 1. 1.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2장 증권발행

제3장 증권거래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증권시장

제3절 지속적 정보공개

제4절 금지되는 거래행위

제4장 상장회사의 인수(收購)

제5장 증권거래소

제6장 증권회사

제7장 증권등록결제기구

제8장 증권관련업무기구

제9장 증권업협회

제10장 증권감독관리기구

제11장 법률책임

제12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증권발행과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공이익의 유지 및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①1) 중국내 주식(股票), 회사채(公司債券)와 국무원이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타 증권의 발행과 거래에 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公司法)>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적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정부채권, 증권투자기금 지분(浬額)의 상장거래에 본법을 적용한다; 기타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③ 증권과생상품의 발행, 거래의 관리방안에 관하여는 국무원이 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3조 증권발행, 거래에 관한 업무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 증권발행, 거래 업무의 당사자는 법률지위에 있어 평등하며 자발성, 유상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발행, 거래 업무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사기적, 내부거래와 증권시장의 조종행위는 금지된다.

제6조 증권업과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은 독립경영, 분리관리되어야 하며, 증권회사와 은행, 신탁, 보험업에 관한 업무기구는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률에 따라 전국 증권시장에 대하여 집중통일적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②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필요한 경우 하급기관(派出機構)을 설립하고 권한을 위임하여 감독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국가가 증권발행, 거래 업무에 있어 집중적·통일적 감독관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법에 의해 증권업협회를 설립하여 자율적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국가회계감사기관은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 2 장 증권발행

제10조 ① 증권의 공개발행은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 혹은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증권을 공개발행할 수 없다.

② 아래 경우 중 하나를 공개발행이라 한다:

- (1) 불특정인을 상대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 (2)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대상자가 누계 200인을 초과한 경우;
- (3) 기타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정한 경우.

③ 비공개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 광고, 공개적 권유, 탈법적 공개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① 발행인이 주식, 전환사채의 공개발행을 신청하거나 법률에 의한 위탁발매(承銷)방식을 채택하거나 혹은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보증(保薦)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증권을 공개발행하려면 보증인 자격을 가진 기구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보증인은 업무규칙과 영업규범을 준수하고 신의성실과 근면충실하며 발행인의 신청서류와 정보공시자료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를 실시하여 발행인으로 하여금 규범에 의한 활동을 하도록 독려한다.

③ 보증인의 자격 및 그 관리방안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12조 ①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 설립을 위해 주식을 공개발행할 경우<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 규정한 요건과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정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주식공모신청서와 아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회사 정관(章程);
- (2) 발기인 약정서(協議);
- (3) 발기인의 성명 혹은 명칭, 발기인이 인수하기로 한 주식 수, 출자 종류 및 자금증명서(驗資證明);
- (4) 주식발행 제안설명서(招股說明書);
- (5) 주금납입은행의 상호 및 주소;
- (6) 위탁발매기구의 상호 및 위탁발매 관련 약정서(有關的 協議).

② 본법의 규정에 의해 보증인을 둔 경우 보증인이 발행한 발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 행정법규가 회사 설립에 있어 승인을 요하도록 규정한 때에는 이에 상응한 승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회사가 신주를 공개발행할 경우 아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건전하고 운용이 양호한 조직기구를 갖출 것;

- (2) 지속적 수익창출능력을 갖추고 재무상태가 양호할 것;
 - (3) 최근 3년간 재무회계서류에 허위 기재나 기타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을 것;
 - (4) 기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정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요건.
- ② 상장회사가 비공개로 신주를 발행하려면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정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① 회사가 신주를 공개발행할 때에는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주식공모신청서와 아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회사 영업허가증(營業執照);
- (2) 회사 정관;
- (3) 주주총회 결의서;
- (4) 신주발행제안설명서;
- (5) 재무회계보고서;
- (6) 주금납입은행의 상호 및 소재지;
- (7) 위탁발매기구의 상호 및 위탁발매에 관한 약정서.

② 본법에 따라 보증인을 둔 경우 보증인이 발행한 발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사가 주식을 공개발행하여 모집한 자금은 신주발행제안설명서에 열거된 자금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제안설명서에 열거된 자금용도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함부로 용도를 변경하고도 시정조치하지 않거나 주주총회의 사후인가를 받지 않으면 신주를 공개발행하지 못한다.

제16조 ① 회사채의 공개발행은 아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주식회사의 경우 순자산이 인민폐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유한회사(有限責任公司)의 경우 순자산이 인민폐 6,000만 원 이상일 것;
- (2) 회사채 누계 잔고가 회사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3) 최근 3년간 평균 배당 가능 이율이 회사채의 1년분 이자를 지급하기에 충분할 것;
- (4) 모집자금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게 투자할 것;
- (5) 채권의 이율은 국무원이 제한한 평균이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 (6) 기타 국무원이 정하는 요건.

② 회사채 공개발행으로 모집된 자금은 승인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결손보전이나 비생산적 지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장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제①관(款)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는 이외에 본법의 주식 공개발행 요건에도 부합해야 하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① 회사채의 공개발행 신청을 하려면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 혹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아래 문서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회사 영업허가증;
- (2) 회사 정관;
- (3) 회사채 모집방법;
- (4) 자산평가보고서 및 자금증명보고서;
- (5) 기타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 혹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요건.

② 본법에 따라 보증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발급한 발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시 회사채 공개발행을 할 수 없다:

- (1) 직전 공개발행한 회사채가 전부 모집에 실패한 경우;
- (2) 기이 공개발행한 회사채 혹은 기타 채무에 대하여 위약사항이 있거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있고 여전히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 (3) 본법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발행한 회사채의 모집시 승인된 자금용도를 변경한 경우.

제19조 발행인이 법에 따라 증권발행을 승인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류의 양식과 제출절차는 법에 의해 승인책임을 진 기구 혹은 부서에서 정한다.

제20조 ① 발행인이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 혹은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에 제출한 증권발행신청서류는 진실, 정확, 완전해야 한다.

② 증권발행을 위해 관련 문서들을 발급하는 증권관련업무기구와 그 종사자는 법이 정한 직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발급한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21조 발행인이 주식을 제1차 공개발행할 때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한 다음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관련신청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제22조 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발행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에 따라 주식발행신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발행심사위원회는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직원과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투표방식으로 주식발행신청에 대하여 표결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③ 발행심사위원회의 구체적 조직방법, 구성인원의 임기, 업무절차는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23조 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정 요건에 따라 주식발행신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절차는 공개해야 하며 법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② 주식발행의 심사와 승인에 참여한 사람은 발행신청인과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직접 혹은 간접으로 발행신청인에게서 증여를 받지 못하고 발행신청을 승인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며 발행신청인과 사적인 접촉을 하지 못한다.

③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가 회사채 발행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위 ①, ②관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4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 혹은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는 증권발행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정 요건과 법정 절차에 따라 승인 혹은 불승인의 결정을 해야 하며, 발행인이 보완요구에 따라 발행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증권발행신청이 승인되면 발행인은 법률, 행정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증권을 공개발행하기 전에 공개발행모집서류를 공고하여 공개하고 당해 서류들을 지정 장소에 비치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② 증권발행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기 전에는 누구도 정보를 공개 혹은 누설할 수 없다.

③ 발행인은 공개발행모집서류를 공고하기 전에는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26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는 기이 증권발행을 승인한 결정에 대하여 법정요건이나 법정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아직 증권이 발행되기 전이면 이를 취소하고 발행을 정지한다. 이미 발행은 되었지만 아직 상장되기 전이라면 발행 승인결정을 취소하고 발행인은 발행가액 및 동기간의 은행예금이자를 가산하여 증권소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보증인은 발행인과 연대책임을 지되 다만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발행인의 지배주주²⁾ 및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3)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

제27조 주식이 법에 따라 발행된 후 일어나는 발행인의 경영 및 수익의 변화는 발행인 자신의 책임이다. 이러한 변화가 초래한 투자위험은 투자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제28조 ① 발행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법률, 행정법규에서 증권회사가 위탁발매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발행인은 증권회사와 위탁발매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증권의 위탁발매업무는 대행발매(代銷) 혹은 인수발매(包銷)의 방식에 의한다.

② 증권대행발매는 증권회사가 발행인을 대리하여 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위탁발매가 종료하면 아직 발매하지 못한 증권은 전부 발행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이다.

③ 증권인수발매는 증권회사가 발행인의 증권을 약정에 따라 전부 구입하거나 위탁발매 종결시에 발매 후 남은 증권을 전부 스스로 인수하는 위탁발매 방식이다.

제29조 증권을 공개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법에 따라 위탁발매할 증권회사를 자체 선택할 권리가 있다. 증권회사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증권위탁발매업무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증권회사가 증권을 위탁발매할 때 발행인과 대행발매 혹은 인수발매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자의 성명;
- (2) 대행발매, 인수발매 증권의 종류, 수량, 금액 및 발행가격;
- (3) 대행발매, 인수발매의 기간 및 시기(起止日期)와 중기;
- (4) 대행발매, 인수발매의 대금지급방식 및 시기;
- (5) 대행발매, 인수발매의 수수료와 결제방법;
- (6) 위약책임;
- (7) 기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사항.

제31조 증권회사는 증권을 위탁발매함에 있어 공개발행모집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하여 심사해야 한다; 허위 기재, 오도성 설명 혹은 중대한 누락을 발견한 때에는 발매 활동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발매된 경우에는 즉시 발매 중단과 함께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2조 불특정인을 상대로 발행한 증권의 액면가 총액이 인민폐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위탁발매단(承銷團)을 구성하여 위탁발매를 해야 한다. 위탁발매단은 주관(主管)위탁발매회사와 참여(參與)위탁발매회사로 구성한다.

제33조 ① 증권의 대행발매나 인수발매의 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증권회사는 대행발매, 인수발매의 기간중에는 대행발매, 인수발매 증권의 청약인에게 증권을 우선발매할 것을 보장해야 하고, 증권회사는 본 회사(발행회사)를 위해 대행발매할 증권에서 제외시켜 놓거나 인수매매한 증권을 사전구입하여 확보하여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주권발행을 함에 있어 액면초과발행을 할 때에는 그 발행가격은 발행인과 위탁발매하는 증권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5조 주권발행에서 대행발매방식을 택한 경우 대행발매기간이 만료되고 투자자에게 발행한 주식 수량이 당초 공개발행하기로 한 예정 주식 총수량의 70%에 미달하게 되면 발행 실패로 본다. 발행인은 발행가에 동기간의 은행예금이자를 가산하여 주식청약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36조 주식을 공개발행함에 있어 대행발매와 인수발매의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인은 규정

된 기간 내에 주식발행현황을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증권거래

제 1 절 일반규정

제37조 ① 증권거래 당사자가 법에 따라 매매하는 증권은 법에 의해 발행되고 교부한 증권이어야 한다.

② 법에 의하지 않고 발행한 증권은 매매하지 못한다.

제38조 법에 의해 발행된 주식, 회사채 및 기타 증권 중 법률에 그 양도기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한 내에는 매매할 수 없다.

제39조 법에 의해 공개발행한 주식, 회사채, 기타 증권은 법에 의해 설립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거나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거래장소에서 양도하여야 한다.

제40조 증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할 때에는 공개적 집중거래방식 혹은 기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승인한 방식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제41조 증권거래의 당사자가 매매한 증권은 지면(紙面)형식을 채택하거나 기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 증권거래는 현금이나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에 의해 거래한다.

제43조 ① 증권거래소, 증권회사나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종사자,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직원 및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주식거래 참여가 금지된 사람은 임기중이나 법정 기한 내에는 직접 혹은 가명,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 매매하지 못하며 타인이 증여하는 주식을 수수하지 못한다.

② 누구도 전관의 구성원이 된 때에는 보유하던 주식을 법에 의해 양도하여야 한다.

제44조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구는 법에 의해 고객이 개설한 계좌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 ① 주식발행을 위해 제출된 회계심사보고, 자산평가보고 혹은 법률의견서 등 서류를 작성한 증권관련업무기구와 그 종사자는 당해 주식의 위탁발매기간 및 그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당해 주식을 매매하지 못한다.

② 전관의 규정 이외의 상장회사의 회계보고, 자산평가보고 혹은 법률의견서 등 서류를 작성한 증권관련업무기구와 그 종사자는 상장회사가 위탁한 날로부터 위 서류들이 공개된 날 이후 5일까지 당해 주식을 매매하지 못한다.

제46조 ① 증권거래에 관한 수수료 징수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수수료 항목, 수수료 기준, 수수방법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증권거래의 수수료 항목, 수수료 기준과 관리방안은 국무원 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정한다.

제47조 ① 상장회사 이사(董事), 감사, 고위관리임원(高級管理人員),⁴⁾ 상장회사 주식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그 보유한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내에 재매입한 때에는 이로 인한 수익은 당해 회사 소유로 귀속되고 회사 이사회는 그 수익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회사의 인수발매에 따라 발매 후 남은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회사 이사회가 전관 규정을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 주주는 이사회에 30일 내에 집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기간 내에 집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명의로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사 이사회가 ①관의 규정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아니 할 경우 책임 있는 이사는 법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

제 2 절 증권시장

제48조 ① 증권의 상장거래 신청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소는 법에 의해 동의여부를 심사하고 쌍방이 상장 약정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증권거래소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의 결정에 근거하여 정부채권의 상장거래를 처리한다.

제49조 ① 주식, 전환사채 혹은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하여 보증제도가 실시되는 증권의 증권거래 상장신청은 보증자격이 있는 기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본법 제11조 제②, ③관 규정은 상장보증인에게 적용된다.

제50조 ① 주식회사가 증권상장을 신청할 경우 아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주식이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의해 공개발행이 승인되었을 것;
- (2) 회사 자본총액이 인민폐 3,000만 원 이상일 것;
- (3) 공개발행한 주식이 회사 자본총액의 25% 이상일 것; 회사 자본총액이 인민폐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발행 주식의 비율이 10% 이상일 것;
- (4) 회사에 최근 3년간 중대 위법행위가 없고 재무회계보고에 허위기재가 없을 것.

② 증권거래소는 전관 규정의 상장요건을 강화할 수 있고 이 때에는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국가는 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상장요건에 부합하는 회사에 대하여 상장거래를 하도록 독려한다.

제52조 증권시장 신청은 증권거래소에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1) 상장보고서;
- (2) 주식시장신청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서;
- (3) 회사 정관;
- (4) 회사 영업허가증;
- (5) 법에 따라 회계사무소가 회계감사한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재무회계보고서;
- (6) 법률의견서와 상장보증서;
- (7) 최근 주식발행제안설명서;
- (8) 기타 증권거래소 상장규칙(上市規則)이 규정한 문서.

제53조 증권거래소로부터 주식시장신청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 상장약정서에 서명한 회사는 규정된 기간 내에 증권시장 관련서류를 공고하고 해당 서류들을 지정장소에 비치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4조 상장약정서에 서명한 회사는 전조에 규정된 서류를 공고하는 외에 아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1) 주식의 증권거래소 거래를 승인받은 일시;
- (2) 회사 주식지분 최다 보유자 상위 10명 주주의 명단과 보유주식 수;
- (3)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4)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의 성명 및 그가 보유한 당해 회사 주식과 채권현황.

제55조 상장회사가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소는 주식의 상장거래를 잠정 정지한다:

- (1) 회사 자본총액, 주식지분 분포 등의 변화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 (2) 회사가 규정에 따라 그 재무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재무회계보고서에 허위 기재나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회사에 중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 (4) 회사가 최근 3년간 연속 결손을 본 경우;
- (5) 기타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이 규정한 사항.

제56조 상장회사가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소는 그 주식 상장거래의 중단을 결정한다:

- (1) 회사 자본총액, 주식 지분분포에 변화가 발생하여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증권거래소가 규정한 기한 내에도 여전히 상장요건에 달하지 못한 경우;
- (2) 회사가 규정에 따라 그 재무상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재무회계보고서에 허위기재를 하고도 시정을 거부할 경우;
- (3) 회사가 최근 3년간 연속 결손이 발생하고 이후 1개 연도 내에 이익발생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 (4) 회사가 해산 혹은 파산선고를 당한 경우;
- (5) 기타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이 규정한 사항.

제57조 회사가 회사채 상장거래를 신청한 때에는 아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회사채의 만기가 1년 이상일 것;
- (2) 회사채의 실제 발행액이 인민폐 5,000만 원 이상일 것;
- (3) 회사가 채권상장신청시 법에서 정한 회사채 발행요건에 여전히 부합할 것.

제58조 ① 회사채 상장거래 신청시 증권거래소에 아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상장보고서;
- (2) 회사채 상장신청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 (3) 회사 정관;
- (4) 회사 영업허가증;
- (5) 회사채 모집방법;
- (6) 회사채 실제 발행 총액;
- (7) 기타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이 정한 사항.

② 전환사채 상장거래신청은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회사채 상장거래신청이 증권거래소의 심사동의를 거쳐 상장약정서에 서명한 회사는 규정된 기한 내에 회사채 상장서류 및 관련 문서들을 공고하고 그 신청서류들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0조 회사채가 상장거래된 이후 회사에 아래 사항 중 하나가 있으면 증권거래소는 결정으로 회사채 상장거래를 일시정지시켜야 한다:

- (1) 회사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때;
- (2) 회사 사정에 중대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채 상장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3) 회사채 발행으로 모집된 자금을 승인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 한 때;
- (4) 회사채 모집방안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때;
- (5) 회사가 최근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한 때.

제61조 ① 회사가 전조 제(1), (4)항에 정한 사정이 있고 조사한 결과가 중한 때 혹은 전조 제(2), (3), (5)항에 정한 사정 중 하나가 규정된 기한 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면 증권거래소는 결정으로 회사채 상장거래를 폐지한다.

② 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증권거래소가 그 회사채 상장거래를 폐지한다.

제62조 증권거래소가 한 상장 부동산, 상장일시정지, 상장폐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증권거래소가 설립한 재심(復核)기구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절 지속적 정보공개

제63조 발행인이나 상장회사가 법에 따라 공시한 정보는 진실, 정확,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재, 오도성 설명(誤導陳述)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공개발행하거나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의 승인을 받아 회사채를 공개발행함에 있어 주식발행제안설명서, 회사채 모집방안은 공고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신주나 회사채를 공개발행할 때 재무회계보고서도 공고해야 한다.

제65조 상장회사와 회사채 상장거래 회사는 매 회계연도의 상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아래 내용을 기재한 중기(中期)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이를 공고해야 한다:

- (1) 회사재무보고서와 경영상황;
- (2) 회사와 관련된 중대 소송상황;
- (3) 기이 발행한 주식, 회사채의 변동상황;
- (4) 주주총회의 심의에 부처진 중요사항;
- (5) 기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사항.

제66조 상장회사와 회사채 상장거래 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아래 내용이 기재된 연도보고를 하고 아울러 공고해야 한다:

- (1) 회사 개요;
- (2) 회사 재무회계보고와 경영상황;
- (3)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 소개 및 주식보유현황;
- (4) 기이 발행한 주식, 회사채 현황과 회사 주식지분 최다보유자 상위 10명의 주주 명단과 보유 주식수;
- (5)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6) 기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사항.

제67조 ① 상장회사 주식거래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건이 발생하고 투자자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상장회사는 즉시 당해 중대사건의 상황을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수시보고(臨時報告)함과 아울러 사건의 발생원인, 현재의 상태와 발생가능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공고하고 설명해야 한다.

② 아래 상황이 전관에서 말하는 중대 사건이다:

- (1) 회사의 경영방침과 경영범위에 중대 변화가 있는 때;
- (2) 회사가 중대 투자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재산취득을 위한 결정을 한 때;
- (3) 회사가 회사의 자산, 부채, 권리나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계약을 체결한 때;
- (4) 회사에 중대한 채무가 발생하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중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위약상황이 발생한 때;
- (5) 회사가 중대 손해 혹은 중대 손실이 발생한 때;

- (6) 회사 생산경영의 외적 여건에 중대 변화가 발생한 때;
- (7) 회사의 이사, 1/3 이상의 감사 혹은 사장이 변동된 때;
- (8) 회사 총주식의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 혹은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소유지분 혹은 회사 지배상황에 변화가 발생한 때;
- (9) 회사가 감사, 합병, 분리, 해산 또는 파산신청의 결정을 한 때;
- (10) 회사가 중대소송에 개입되거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가 법에 따라 취소 혹은 무효선고된 때;
- (11) 회사가 범죄혐의에 연루되어 사법기관에 의해 입건 조사를 받거나, 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직임원이 범죄혐의에 연루되어 사법기관에 의해 강제처분을 받게 된 때;
- (12) 기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정한 사항.

제68조 ① 상장회사 이사, 고위관리임원은 회사의 정기보고에 대하여 서명하고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 감사회는 이사회가 작성한 회사의 정기보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은 상장회사가 공시한 정보가 진실, 정확, 완전함을 보증해야 한다.

제69조 발행인과 상장회사가 공고한 주식발행제안설명서, 회사채모집방안, 재무회계보고, 상장보고서, 연도보고, 중기보고, 수시보고 및 기타 정보공시자료에 허위 기재, 오도성 설명 혹은 중대한 누락이 있어 투자자로 하여금 증권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발행인과 상장회사는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발행인,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과 기타 직접책임 있는 직원 및 보증인, 위탁발매 증권회사는 발행인, 상장회사와 연대배상책임을 지고, 다만 자기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제외한다; 발행인,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때에는 발행인, 상장회사와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제70조 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지정한 언론매체에 발표하고 동시에 정보를 회사 소재지, 증권거래소에 비치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1조 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상장회사의 연도보고, 중기보고, 수시보고 및 공고 현황을 감독하고 상장회사가 신주를 할당 혹은 배정하는 현황에 대하여 감독하고 상장회사 지배주주와 정보공시의무자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한다.

② 증권감독관리기구, 증권거래소, 보증인, 위탁발매 증권회사 및 이와 관련된 사람은 회사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전에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 증권거래소가 증권 상장거래를 일시정지 혹은 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공고하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금지되는 거래행위

제73조 증권거래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나 불법으로 내부정보를 획득한 사람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74조 증권거래 내부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 아래 사람들을 포함한다:

- (1) 발행인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
- (2) 회사 주식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 및 그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 회사를 사

실상 지배하는 사람 및 그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

(3) 발행인이 지배하는 회사 및 그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

(4)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

(5) 증권관리감독기구 직원 및 기타 법정 직무상 증권의 발행, 거래를 관리하는 사람;

(6) 보증인, 위탁발매 증권회사,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관련업무기구의 관련자;

(7) 기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정한 사람.

제75조 ① 증권거래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의 경영, 재무와 관련되거나 당해 회사 증권의 시장가격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된 정보를 내부정보라고 한다.

② 아래 정보는 모두 내부정보에 속한다:

(1) 본법 제67조 제②관에 열거한 중대사건;

(2) 회사가 배당 혹은 증자하기로 한 계획;

(3) 회사 주식보유구조의 중대 변화;

(4) 회사 채무담보의 중대 변경;

(5) 회사의 주요 영업용 자산의 저당, 양도 혹은 최초 가치의 30%를 초과하는 폐기;

(6) 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의 행위가 중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때;

(7) 상장회사의 인수와 관련된 사항;

(8) 기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증권거래가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한 중요 정보.

제76조 ① 증권거래 내부정보를 알게 된 사람과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사람은 내부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당해 회사의 증권을 매매하거나 당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당해 증권을 매매할 것을 권유하지 못한다.

②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직접 보유 혹은 기타 행동일치의 목계를 통하여 공동보유한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이 인수한 주식은 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③ 내부거래행위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행위자가 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77조 ① 누구든지 아래 방법으로 증권시장을 조종하는 것이 금지된다:

(1)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자금집중의 우위, 주식보유의 우위 혹은 정보이용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이를 결합하거나 접속(連續)매매로 증권거래가격 혹은 증권거래량을 조종하는 행위;

(2) 타인과 통정하여 사전에 약정된 시간, 가격과 방식으로 서로 증권거래를 진행하여 증권거래가격 혹은 증권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행위;

(3)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좌 상호간에 거래를 진행하여 증권거래가격 혹은 증권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기타 수단으로 증권시장을 조종하는 행위.

② 증권시장을 조종하는 행위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 행위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78조 ① 국가기관 종사자, 언론기관 종사자 및 이와 관련된 인사는 허위정보를 제작, 전파하여 증권시장을 교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관련업무기구 및 그 종사자는 증권거래 업무 수행중에 허위설명이나 정보를 오신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기관이 증권시장 정보를 보도할 때에는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오신케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79조 ① 증권회사 및 그 종사자는 아래에 열거한 고객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사기행위에 종사하지 못한다:

- (1) 고객의 위임에 위배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 (2) 규정시간 이외에 고객에게 거래의 서면확인 문건을 제공하는 행위;
- (3) 고객이 매매를 위임한 증권 혹은 고객계좌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
- (4) 고객의 위임을 받지 않고 함부로 고객의 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하거나 고객의 명의를 모용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 (5) 수수료 수입을 취하기 위해 고객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증권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6) 언론매체를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허위 혹은 투자자로 하여금 오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전파하는 행위;
- (7) 기타 고객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위배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② 고객을 사기한 행위로 고객에게 입힌 손해는 행위자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80조 법인이 불법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인이 자기 혹은 타인의 증권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81조 자금의 주식시장에 대한 합법적 유입은 장려하되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금지한다.

제82조 누구도 공공자금을 유용하여 증권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이 지배하는 기업이 상장거래되는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4조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관련업무기구 및 그 종사자는 증권거래 업무 중 발견한 금지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즉시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상장회사의 인수

제85조 투자자는 청약인수(要約收購), 협의인수(協議收購) 기타 합법적 방식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제86조 ① 증권거래소를 통한 증권거래에 있어 투자자가 보유하거나 협의 또는 기타 행동일치의 목계로서 타인과 공동으로 상장회사가 기이 발행한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 증권거래소에 서면보고하고 당해 상장회사에 통지하며 공시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는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더 이상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자자가 보유하거나 협의 또는 기타 행동일치의 목계로서 타인과 공동으로 상장회사의 기이 발행한 주식의 5%를 보유하게 된 후 당해 상장회사의 기 발행 주식의 비율이 증가할 때마다 혹은 5% 이하로 감소할 때도 전관의 규정과 같이 보고 및 공고해야 한다.

③ 보고기간 중과 보고 및 공고 후 2일 이내에는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해야 할 서면보고 및 공고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주식 보유자의 성명, 주소;
- (2) 보유 주식의 종류(名稱)와 액수;

(3) 주식 보유로 법정 비율에 달하거나 보유 주식의 증감 변화로 법정비율에 이르게 된 일시.

제88조 ① 증권거래소를 통한 증권거래에 있어 투자자가 보유하거나 협의 또는 행동일치의 목적으로써 타인과 공동으로 상장회사의 기이 발행한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계속 인수를 진행할 때에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상장회사의 전체 주주에게 상장회사 주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매수하겠다는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 주식의 일부 매수에 관한 청약은 약정에 의하여야 하고 피인수 회사 주주의 매도 승낙한 주식의 수가 매수하기로 한 지분비율을 초과한 때에는 매수인은 안분비례에 의해 매수한다.

제89조 ① 전조 규정에 의해 매수청약을 할 경우 매수인은 사전에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상장회사 인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 인수인의 성명, 주소;
- (2) 인수인의 인수에 관한 결정서;
- (3) 인수 대상 상장회사의 상호;
- (4) 인수 목적;
- (5) 인수 주식지분의 구체적 종류와 인수예정 주식지분의 수;
- (6) 인수기간, 인수가격;
- (7) 인수 소요자금 내역 및 자금의 보증;
- (8) 상장회사 인수보고서 제출시 보유한 피인수회사 주식 지분이 당해 회사 기 발행주식지분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

② 인수인은 상장회사 인수보고서를 동시에 증권거래소에도 제출해야 한다.

제90조 ① 인수인은 전조 규정에 의한 상장회사 인수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후에 그 인수청약을 공고한다. 위 기간 내에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상장회사 인수보고서에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인수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인수인은 그 매수청약을 공고하지 못한다.

② 인수청약으로 매수약정하는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되,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91조 인수청약이 확정된 후 그 승낙기간 내에는 인수인은 인수청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인수인이 인수청약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 및 증권거래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공고해야 한다.

제92조 인수청약시 제시한 각종 인수조건은 피인수 회사의 전체 주주에게 적용된다.

제93조 청약인수방식을 취할 경우 인수인은 인수기간 내에 피인수 회사의 주식을 매도할 수 없고, 청약인수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청약 당시의 조건을 초과하여 피인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없다.

제94조 ① 협의인수방식을 취할 경우 인수인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인수 회사의 주주와 협의방식을 통하여 주식 지분을 양도받을 수 있다.

② 협의방식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인수인은 3일 이내에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서면보고하고 공고한다.

③ 공고 전에는 협의인수를 이행하지 못한다.

제95조 협의인수방식을 취할 경우 협의 당사자 쌍방은 증권등록결제기구에 협의양도할 주권을 임시위탁할 수 있고, 인수자금을 지정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제96조 ① 협의인수방식을 취할 경우 인수인이 직접인수하거나 혹은 협의 또는 행동일치

의 목계로서 타인과 공동으로 특정 회사의 기발행 주식의 30% 이상에 달한 다음 계속하여 인수에 나아가는 때에는 당해 주식회사 소유 주주에게 상장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청약면제조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인수인은 전관 규정에 의한 청약방식으로 상장회사 주식 지분을 인수할 때에는 본법 제 89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97조 ① 인수기간이 만료된 이후 피인수 회사의 주식 지분 분포가 상장요건에 위배되면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법에 따라 상장거래를 폐지한다; 피인수 회사 주식을 보유한 기타 주주는 인수인에게 인수청약과 동등한 조건으로 그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인수인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인수행위 완성 후 피매수 회사가 주식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에 따라 기업종류를 변경해야 한다.

제98조 상장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인수인이 보유한 피인수 회사의 주식은 인수행위 완성 후 1년 이내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99조 인수행위 완성 후 인수인과 피인수 회사가 합병하여 당해 회사를 해산할 경우 피해산 회사의 주식에 대해 인수인이 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한다.

제100조 인수행위 완성 후 인수인은 15일 이내에 인수상황을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고 공고한다.

제101조 ① 국가가 위임투자한 기구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인수하려면 국무원이 정한 바에 따라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본법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상장회사 인수의 구체적 방안을 제정한다.

제 5 장 증권거래소(證券交易所)

제102조 ① 증권거래소는 증권을 집중거래하기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증권거래를 조직, 감독하며 자율관리를 실시하는 법인이다.

② 증권거래소의 설립과 해산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103조 ①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려면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증권거래소 정관의 제정과 수정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4조 증권거래소는 그 명칭 중에 “증권거래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어떠한 기구나 개인도 “증권거래소” 혹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 ① 증권거래소가 자율 처분권을 가진 각종 비용 수입은 당해 증권거래 장소와 시설의 적정한 운용과 점진적 개선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원제를 실시하는 증권거래소의 누적 재산은 회원들의 총유에 속하며 그 권익은 회원들이 공동으로 향유하고 그 존속기간 중에는 당해 누적 재산을 회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제106조 증권거래소는 이사회(理事會)를 둔다.

제107조 증권거래소는 사장(總經理) 1인을 두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임명한다.

제108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47조5)가 규정하는 사항 혹은 아래 사항 중 하나가 있으면 증권거래소의 책임자(負責人)가 될 수 없다:

- (1) 위법행위 또는 기율위반행위로 직위가 해제된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책임자 혹은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에서 직위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사람;
- (2) 위법행위 또는 기율위반행위로 자격이 취소된 변호사(律師), 등록회계사 혹은 투자자문

기구, 재무고문기구, 신용평가기구, 자산평가기구, 감정기구의 전담 직원이었다가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사람.

제109조 위법행위 또는 기율위반행위로 해고된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관련업무기구, 증권회사의 종사자와 해고된 국가기관 종사자는 증권거래소의 직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10조 증권거래소의 집중교역에 참여하려면 증권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제111조 투자자는 증권회사와 증권거래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증권회사에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서면, 전화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해 증권회사로 하여금 증권매매를 대행하도록 위임한다.

제112조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위임을 받아 증권거래규칙(證券交易規則)에 따라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권거래소 장내의 집중거래에 참여하며, 계약결과에 따라 상응한 결제책임을 부담한다; 증권등록결제기구는 계약결과에 따라 청산수수규칙(清算交收規則)에 근거하여 증권회사와 증권과 자금의 교부 및 지급절차를 진행하며 증권회사 고객을 위해 증권의 명의 개서 절차를 처리한다.

제113조 ① 증권거래소는 공평한 집중거래를 조성하기 위해 증권거래 체결 즉시 상황을 공포하고 거래일마다 증권시장 상황표를 작성 공포해야 한다.

② 증권거래소의 승인 없이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증권거래의 실시간 상황을 발표하지 못한다.

제114조 ① 돌발성 사건으로 인하여 증권거래의 정상적 진행에 영향이 발생한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기술적 거래중단조치(技術性 停牌措施)를 취할 수 있다.

② 증권거래소가 기술적 거래중단조치를 취하거나 임시휴장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115조 ①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에 대해 현장 감독통제를 하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 이상거래의 징후에 대하여 보고한다.

②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및 유관 정보공시 의무자의 정보공시를 감독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시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③ 증권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중대한 이상거래 상황이 발견된 증권계좌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이때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116조 ① 증권거래소가 수취한 매매비용과 회비(席位費)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적립하여 위험기금(風險基金)을 설립한다. 위험기금은 증권거래소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② 위험기금을 적립하는 구체적 비율과 사용방법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7조 증권거래소는 적립한 위험기금을 은행에 독립한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 관리하며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8조 증권거래소는 증권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상장규칙(上市規則), 거래규칙(交易規則), 회원관리규칙(會員管理規則) 및 기타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9조 증권거래소의 관리자와 기타 직원이 증권거래와 관련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본인 혹은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존재할 때에는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0조 법에 의해 제정된 거래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는 그 결과를 변경하지 못한다. 거래 중 위법으로 거래한 사람이 저야 할 민사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위법거래로 얻은 이

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1조 증권거래소 내에서 증권거래에 종사하는 직원이 증권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징계처분을 한다; 정상이 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장내(入場)거래를 금지한다.

제 6 장 증권회사

제122조 증권회사 설립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증권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제123조 본법에서 말하는 증권회사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본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유한책임회사 혹은 주식회사를 말한다.

제124조 증권회사의 설립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법률과 행정법규에 부합하는 회사 정관이 있을 것;
- (2) 주요 주주가 지속적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신용이 양호하며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 혹은 범칙(違規)행위가 없고 순자산이 인민폐 2억 원 이상일 것;
- (3)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등록자본이 있을 것;
- (4)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이 임명자격을 구비하고 종사자가 증권업무종사자격이 있을 것;
- (5) 완벽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출 것;
- (6) 기준에 맞는 영업장소와 업무시설을 갖출 것;
- (7)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거나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사항.

제125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거쳐 증권회사는 아래 분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할 수 있다:

- (1) 증권의 위탁매매(經紀);
- (2) 증권투자자문;
- (3) 증권거래, 증권투자업무와 관련된 재무고문;
- (4) 증권위탁발매와 보증;
- (5) 증권자기매매;
- (6) 증권자산관리;
- (7) 기타 증권업무.

제126조 증권회사는 그 명칭 중에 증권유한책임회사 혹은 증권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7조 ① 증권회사가 본법 제1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업무를 하려면 등록자본이 최저 인민폐 5,000만 원이어야 한다; 제(4)항 내지 제(7)항 업무 중 하나를 하려면 등록자본은 최저 인민폐 1억 원이어야 한다; 제(4)항 내지 제(7)항 업무 중 2 이상을 영위하려면 등록자본은 최저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증권회사의 등록자본은 실제 납입된 자본을 말한다.

②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신중감독관리원칙(審慎監管原則)과 각 업무의 위험정도에 따라 등록자본의 최저한도를 조정할 수 있고, 다만 전관에 규정된 한도액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8조 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 설립신청서 수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

정 요건과 법정 절차에 따라 신증감독관리원칙에 근거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승인 혹은 불승인의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불승인의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증권회사 설립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인은 규정된 기간 내에 회사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③ 증권회사는 영업허가증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증권업무경영허가증(經營證券業許可證)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권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증권회사라도 증권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제129조 ① 증권회사가 지점 기구의 설립, 인수 혹은 취소를 하거나, 업무범위 혹은 등록 자본의 변경, 5% 이상 주식지분을 보유한 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의 변경, 회사 정관 중 중요 조항의 변경, 합병, 분할, 회사 종류의 변경, 영업의 중단, 해산, 파산의 경우에는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증권회사가 국외에서 증권업무기구를 설립, 인수 혹은 주식지분 참여를 할 경우에도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 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의 순자본, 순자본과 부채의 비율, 순자본과 순자산의 비율, 순자본과 자기매매, 위탁매매, 자산관리 등 각 업무규모의 비율, 부채와 순자산의 비율 및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 등 위험통제지표에 대하여 규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② 증권회사는 그 주주 혹은 주주의 관계인(關聯人)6)을 위하여 용자 혹은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1조 ①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은 정직성실, 품행양호해야 하고, 증권법률 및 행정법규를 숙지해야 하고,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영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임명 전에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승인한 임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47조 소정의 사유 중 아래에서 열거한 사유가 있으면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이 될 수 없다:

(1) 위법행위 또는 기율위반행위로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의 관리자 혹은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에서 해임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위법행위 또는 기율위반행위로 자격이 취소된 변호사, 등록회계사 혹은 투자자문기구, 재무고문기구, 신용평가기구, 자산평가기구, 감정기구의 전담직원이었다가 자격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32조 위법행위 또는 기율위반행위로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관련업무기구, 증권회사의 종사자로서 해직되거나 국가기관 종사자에서 해직된 사람은 증권회사의 종사자로 임명될 수 없다.

제133조 국가기관 종사자와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회사 겸직취업을 금지받고 있는 사람은 증권회사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34조 국가는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설립한다.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은 증권회사가 납입한 자금 및 기타 법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 구성하며 그 조성,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135조 증권회사는 매년 세후 이윤 중에서 거래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 증권거래의 손실을 보전하는 용도에 사용하며, 구체적 적립비율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136조 ① 증권회사는 건전한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고 효율적인 차단조치를 통해 회사와 고객 사이, 고객 상호간에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② 증권회사는 증권위탁매매업무, 증권위탁발매업무, 증권 자기매매업무 및 증권자산관리업무를 분리하여 관리하며 혼합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7조 ① 증권회사의 자기매매업무는 자기의 명의로 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개인 명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증권회사의 자기매매업무는 자기 소유의 자금 및 법에 의해 적립된 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증권회사는 자기매매 계좌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8조 증권회사는 법에 따른 자율적 경영의 권리를 가지며 합법적 경영에 대하여 간섭받지 아니한다.

제139조 ① 증권회사 고객의 매매결제자금은 상업은행에 예치되어야 하고 각 고객별로 독립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되 구체적 방법과 실시추진의 단계적 일정은 국무원이 정한다.

② 증권회사는 고객의 거래결제자금과 증권을 자기 재산으로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고객의 거래결제자금과 증권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권회사가 파산 혹은 청산된 때에는 고객의 거래결제자금과 증권은 파산재단 혹은 청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고객 자신의 채무 혹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거래결제자금과 증권을 압류(查封), 지급정지(凍結), 압수(沒收) 혹은 강제집행(強制執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0조 ① 증권회사가 위탁매매를 처리할 때에는 통일 제정된 증권매매위탁서(證券買賣委託書)를 위탁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기타 위탁방식을 채택할 때에는 위탁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고객의 증권매매위탁의 거래 성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위탁기록은 규정된 기간 동안 증권회사가 보존하여야 한다.

제141조 ① 증권회사가 증권매매의 위탁을 접수한 때에는 위탁서에 명기된 증권 종류, 매매수량, 가격결정 방식, 가격 범위 등에 근거하여 거래규칙에 따라 증권을 대리매매한다; 매매성립 후에는 규정에 따라 매매체결 통지서(買賣成交報告單)를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증권거래 중 거래행위 및 그 거래결과를 확인하는 대조표(對單)는 진실해야 하며 거래담당자 이외의 심사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일일이 심사하여 전표상의 증권 기재액과 실제 보유한 증권이 서로 일치함을 보증해야 한다.

제142조 증권회사가 고객의 증권매매를 위해 자금 및 증권을 융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국무원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3조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객의 일임을 받아 증권매매의 결정, 증권 종류의 선택, 매매수량 혹은 매매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4조 증권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고객에 대해 증권매매의 수익(보장)이나 증권매매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5조 증권회사 및 그 종사자는 법에 따라 설치된 영업장소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증권매매를 위탁받을 수 없다.

제146조 증권회사의 종사자가 증권거래 업무 활동 중 증권회사의 지시를 집행한 것이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거래규칙을 위반한 때이거나 불문하고 소속 회사가 전부 책임을 부담한다.

제147조 증권회사는 고객의 계좌개설 자료, 매매위탁 자료, 거래기록과 내부관리, 영업업

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보존해야 하며, 누구도 이를 은닉, 위조, 변조 혹은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자료들의 보존기간은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48조 ① 증권회사는 규정에 따라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영업, 재무 등 경영관리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 및 그 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증권회사 및 그 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 혹은 제출하는 정보, 자료는 진실, 정확, 완전해야 한다.

제149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필요할 경우 회계사 사무소, 자산평가기구에 증권회사의 재무상황, 내부지배구조, 자산가치에 대해 회계감사 혹은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0조 ① 증권회사의 순자본 혹은 위험통제지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시정하지 않거나 그 행위가 당해 증권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심각히 위협에 빠뜨려 고객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미칠 때에는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사안을 구분하여 아래 조치를 취한다:

- (1) 영업활동의 제한, 업무의 부분적 일시정지 명령, 새로운 영업허가의 정지;
- (2) 영업 지점 기구의 증설 및 인수 허가의 정지;
- (3) 이윤배당의 제한,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및 복리제공의 제한;
- (4) 재산 또는 재산상에 설정된 기타 권리의 양도 제한;
- (5)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에 대한 교체 명령 혹은 그들 권한의 제한;
- (6)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명령 혹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한;
- (7) 관련 영업허가의 취소.

② 증권회사는 시정이 완료되면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심사 후 위험통제지표에 부합하는 경우 심사 완료 후 3일 내에 기이 취하였던 전관에서 규정한 관련 조치를 해제한다.

제151조 ① 증권회사의 주주가 출자를 가장하거나 출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보유한 당해 증권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전관에 규정한 주주가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에 따라 보유한 증권회사 주식을 양도하기 전이라도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2조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증권회사로 하여금 중대한 위법, 범칙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한 경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그 임명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또 회사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제153조 증권회사가 경영에 위법이 있거나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여 증권시장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투자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행정화의(停業整頓),⁷⁾ 타 기관에의 위탁관리(托管) 혹은 인수관리(接管), 허가취소 등 감독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4조 증권회사가 업무정지 및 행정화의를 명받거나 법에 따라 위탁관리, 인수관리 혹은 청산기간으로 지정받거나 혹은 중대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직접적 책임이 인정되는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 있는 사람에게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출국관리기관에 출국금지의 통지를 하는 것;
- (2) 사법기관에 재산 혹은 재산상에 설정된 기타 권리의 이전, 양도 혹은 기타 방식에 의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할 것을 신청하는 것.

제 7 장 증권등록결제기구(證券登記結算機構)

제155조 ①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증권거래를 위해 증권의 집중 등록(登記), 예탁(存管)과 결제(結算)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목적 법인이다.

②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설립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6조 ①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자기자본이 인민폐 2억圆 이상일 것;
- (2) 증권등록, 예탁 및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갖출 것;
- (3) 주요 관리임원과 종사자가 증권업무종사자격을 보유할 것;
- (4) 기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정한 요건.

② 증권등록결제기구의 명칭 중에 증권등록결제의 문자를 명시해야 한다.

제157조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 (1) 증권계좌, 결제계좌의 개설;
- (2) 증권의 예탁과 명의개서;
- (3) 증권보유자명부의 등록;
- (4)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거래시 (대체)결제 및 (증권과 자금의) 수수;
- (5) 발행인의 위탁을 받아 증권에 관한 권리와 수익의 지급 대행;
- (6) 위 각 업무와 관련된 조회(查詢)의 처리;
- (7) 기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승인한 업무.

제158조 ① 증권등록결제는 전국적으로 집중통일된 운영방식을 채택한다.

②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정관, 업무규칙은 법에 따라 제정하여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9조 ① 증권보유자가 보유한 증권을 상장거래하려면 그 전부를 증권등록결제기구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증권등록결제기구는 고객의 증권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0조 ①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증권발행인에 대하여 증권보유자 명부 및 그 관련자료를 제공한다.

②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증권등록결제의 결과에 근거하여 증권보유자에게 증권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증권보유자에게 등록된 자료를 제공한다.

③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증권보유자명부와 등록자 명의개서 기록이 진실, 정확, 완전함을 보증해야 하며, 이를 은닉, 위조, 변조 혹은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1조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아래 조치를 취하여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보증해야 한다:

- (1) 필수적 업무시설과 완벽한 데이터(數據)보호장치를 보유할 것;
- (2) 업무, 재무, 안전방법 등 방면에서의 완전한 관리체도를 수립할 것;
- (3) 철저한 위험관리체제를 수립할 것.

제162조 증권등록결제기구는 등록, 예탁과 결제에 관한 원본 증빙자료와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엄격히 보존해야 한다. 그 보존기간은 20년 이상이다.

제163조 ①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증권결제위험기금을 설립하여 위약 수수, 기술고장, 취급과오,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생긴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손실을 채당 혹은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② 증권결제위험기금은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영업수입과 수익 중에서 적립하며 결제참여인도 증권 취급량의 일정비율을 납입한다.

③ 증권결제위험기금의 조성, 관리방법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재정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4조 ① 증권결제위험기금은 지정은행 별도계좌에 입금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증권결제위험기금으로 배당한 다음 책임 있는 사람에 구상(追償)하여야 한다.

제165조 증권등록결제기구의 해산 신청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6조 ①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증권거래를 하려면 증권계좌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증권등록결제기구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 본인 명의로 투자자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② 투자자가 증권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중국 공민(公民) 신분 혹은 중국 법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합법증명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국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7조 ① 증권등록결제기구가 증권거래를 위해 대체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결제참여인에게 현물, 자금 상호지불원칙(貨銀對付原則)에 따른 충분한 증권과 자금을 교부받고 아울러 결제에 관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상호지불이 완성되기 전에는 누구도 지불에 사용할 증권, 자금과 그 담보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결제참여인이 제때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업무규칙에 따라 전관에서 기재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제168조 증권등록결제기구가 업무규칙에 따라 보관한 각종 결제자금과 증권은 별도의 대체결제 지불계좌에 예탁하고 업무규칙에 의해 성립된 거래의 대체결제 지불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8 장 증권관련업무기구(證券服務機構)

제169조 ① 투자자문기구, 재무고문기구, 신용평가기구, 자산평가기구 또는 증권관련업무에 종사하는 회계사 사무소는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투자자문기구, 재무고문기구, 신용평가기구, 자산평가기구, 증권관련업무에 종사하는 회계사 사무소의 심사 및 관리방안에 관한 규칙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나 주무관청이 제정한다.

제170조 투자자문기구, 재무고문기구, 신용평가기구의 증권업무 종사자는 증권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증권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증권업무종사자격의 기준과 관리방안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171조 ① 투자자문기구 및 그 종사자가 증권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아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위탁인을 대리하여 증권투자를 하는 행위;
- (2) 위탁인과 증권투자 수익을 분배하거나 증권투자 손실을 분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3) 당해 자문기구가 자문을 제공하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 (4) 언론매체를 이용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하여 허위 혹은 투자자의 오신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전파하는 행위;
- (5)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행위.

② 전관에서 정한 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172조 증권취급업무에 종사하는 투자자문기구와 신용평가기구는 국무원 주무부서에서 정한 기준 또는 비용징수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73조 증권관련업무기구가 증권의 발행, 상장, 거래 등 증권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보고, 자산평가보고, 재무고문보고, 신용평가보고 혹은 법률의견서 등 문서를 작성, 제출할 때에는 충실히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인용한 문서자료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하여 확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 작성, 제출한 문서에 허위기재, 오도성 설명, 혹은 중대한 누락이 있어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발행인, 상장회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되, 다만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 9 장 증권업협회

제174조 ① 증권업협회는 증권업자들의 자율적 조직이며 사단법인(社會團體法人)이다.

② 증권회사는 증권업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증권업협회의 의사결정기구(權力機構)는 전체회원으로 구성된 회원총회이다.

제175조 증권업협회의 정관은 회원총회에서 제정하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한다.

제176조 증권업협회는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 (1) 회원을 증권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조직함;
- (2)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회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함;
- (3) 증권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회원에게 제공함;
- (4) 회원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제정하고 회원 소속 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들간의 업무교류를 전개함;
- (5) 회원간, 회원과 고객간에 발생하는 증권업무 관련 분쟁을 조정함;
- (6) 회원들을 증권업의 발전, 운용실무 및 관련 업무내용에 대해 연구하도록 조직함;
- (7) 회원들의 행위를 감독, 감사하여 법률, 행정법규 혹은 협회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
- (8) 기타 증권업협회 정관에서 정한 직무.

제177조 증권업협회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 구성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거로 선출한다.

제 10 장 증권감독관리기구

제178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증권시장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증권시장질서를 보호하고 그 합법적 운용을 보장한다.

제179조 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증권시장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에 따라 증권시장 감독관리에 관한 예규(規章), 규칙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심사 혹은 승인권을 행사함;
- (2) 증권의 발행, 상장, 거래, 예탁, 결제행위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함;
- (3) 증권발행인, 상장회사,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증권관련업무기구,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증권업무 수행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함;
- (4) 법에 따라 증권업무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행위준칙을 제정하고 감독을 실시함;
- (5) 법에 따라 증권의 발행, 상장 및 거래의 정보공시 상황을 감독, 검사함;

- (6) 법에 따라 증권업협회의 활동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함;
- (7) 법에 따라 증권시장 감독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행함;
- (8)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임무.

②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기타 국가 혹은 지구의 증권감독관리기구와 감독관리에 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경간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0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 (1) 증권발행인, 상장회사,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증권관련업무기구,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에 대한 현장검사;
- (2) 위법행위 및 이와 관련된 현장의 조사 및 증거수집;
- (3) 당사자와 피조사사건에 연루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질문, 피조사사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 요구;
- (4) 피조사사건과 관련된 재산권 등기, 통신기록 등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
- (5) 당사자와 피조사사건에 관련된 단체 및 개인의 증권거래 기록, 등록 명의개서, 재무회계자료 및 기타 관련 문서와 자료에 대한 열람과 등사; 양도, 은닉 혹은 훼손 가능한 문서나 자료에 대하여는 봉인할 수 있다;
- (6) 당사자와 피조사사건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자금계좌,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에 대한 조회; 위법 자금이나 증권 등 혐의에 관련된 재산을 이미 이전 혹은 은닉할 가능성을 입증할 증거가 있거나 중요 증거를 은닉, 위조, 훼손한 때에는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지급정지 혹은 압수를 실시한다;
- (7) 증권시장 조종, 내부거래 등 중대한 증권위법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피조사사건의 당사자의 증권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기간은 15거래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15거래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1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직무를 수행하고 감독, 검사, 조사를 함에 있어 그 감독, 검사, 조사의 담당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하고 합법적 신분증과 감독, 검사, 조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 검사, 조사 담당자가 2인 미만이거나 신분증이나 감독, 검사, 조사 통지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 조사받는 단체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182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며 공정청렴하여야 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득한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3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사, 조사받는 기관이나 개인은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문서나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저지, 기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4조 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제정한 내규, 규칙과 관리감독업무제도는 공개해야 한다.

②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증거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내린 증권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제185조 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국무원 기타 금융감독관리기구와 감독관리정보의 공유체제를 구축한다.

②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직무수행 및 감독, 검사 혹은 조사할 때 유관 부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186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증권위법행위가 범죄 혐의에 해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187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직원은 피감독관리기구에 취업할 수 없다.

제 11 장 법률책임

제188조 법정기관의 승인 없이 증권을 임의로 공개발행하거나 탈법적으로 공개발행한 경우 발행정지와 함께 모집자금과 동기간의 은행이자를 반환할 것을 명하고, 동시에 불법 모집자금액의 5% 이상의 과태료(罰款)에 처한다; 증권을 임의 공개 혹은 탈법적 공개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는 법에 따라 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혹은 부서가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단속(取締)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고(警告)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89조 ① 발행인이 발행요건에 어긋나게 사기수단으로 발행승인을 받은 경우 아직 증권 발행 이전이면 3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미 증권이 발행된 경우 모집자금액의 1% 이상 5%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은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발행인의 지배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전관 위법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는 전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0조 증권회사가 승인 없이 임의 공개발행한 증권을 위탁발매 혹은 대리매매한 때에는 위탁발매 혹은 대리매매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30만원에 미달할 때에는 3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발행인과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경고하고 임명자격이나 증권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하며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91조 증권회사가 증권을 위탁발매함에 있어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경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3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를 정지 혹은 취소한다. 타 증권위탁발매기관 혹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경고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임명자격이나 증권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한다:

- (1) 허위 혹은 투자자를 오도하는 광고 혹은 기타 선전, 권유활동을 한 경우;
- (2) 부정한 경쟁수단으로 위탁발매업무를 유치한 경우;
- (3) 기타 증권위탁발매업무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제192조 보증인이 허위기재, 오도성 설명 혹은 중대한 누락이 있는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경고하며 영업수익을 몰수함과 아울러 영업수익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이 중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정지 혹은 취소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경고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임명자격이나 증권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한다.

제193조 ① 발행인, 상장회사 혹은 기타 정보공시 의무자가 규정에 따른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한 정보에 허위기재, 오도성 설명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정조치

를 명하고 경고하며 3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경고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발행인, 상장회사 혹은 기타 정보공시의무자가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신고서에 허위 기재, 오도성 설명 혹은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정정을 명하고 경고함과 아울러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발행인, 상장회사 혹은 기타 정보공시의무자의 지배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전 2관 위법행위를 지시한 때에는 전 2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에 처한다.

제194조 ① 발행인, 상장회사가 증권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의 용도를 함부로 변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3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발행인,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전관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경고하고 3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5조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 상장회사 주식 5% 이상의 주식 보유자가 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본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때에는 경고하고,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196조 불법으로 증권거래장소를 개설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가 이를 단속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위법소득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원에 미달할 때에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경고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97조 승인받지 않고 증권회사를 설립하거나 불법으로 증권업을 영위한 경우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이를 단속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30만원에 미달한 때에는 3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 혹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경고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98조 본법 규정에 위반하여 임명자격, 증권업무종사자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1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에게 경고하고 3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199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주식거래에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혹은 가명,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 매매한 때에는 불법으로 보유한 주식의 처분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주식매매가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국가 종사자는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과해야 한다.

제200조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관련업무기구의 종사자 혹은 증권업협회 직원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거래기록을 은닉, 위조, 변조 혹은 훼손하거나 투자자를 기망하여 증권매매를 하게 한 때에는 증권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하고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국가 종사자는 행정처분을 과해야 한다.

제201조 주식의 발행, 상장, 거래를 위해 회계보고, 자산평가보고 혹은 법률의견서 등 서류를 작성, 제출한 증권관련업무기구와 직원이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매매한 때에는 불법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주식매매가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02조 증권거래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게 된 사람 혹은 불법으로 내부정보를 획득한 사람이 증권의 발행, 거래나 기타 증권의 가격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 이전에 당해 증권을 매매하거나 당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당해 증권을 매매하도록 권유한 때에는 법에 따라 위법으로 보유한 증권을 처분하도록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3만 원에 미달한 때에는 3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체가 내부거래를 한 때에는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3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권감독관리기구 직원이 내부거래를 한 때에는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03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시장을 조종한 때에는 법에 따라 불법으로 보유하게 된 증권에 대하여 처분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30만 원에 미달할 때에는 3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체가 증권시장을 조종한 때에는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10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04조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금지기간 내에 증권을 매매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매매한 증권의 가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05조 증권회사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증권매매를 위하여 자금이나 증권을 용자한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관련 영업허가를 정지 혹은 취소하며 위법으로 용자한 자금이나 증권의 가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도 경고하고 임명자격 혹은 증권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하며 3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06조 본법 제78조 제①관, 제③관을 위반하여 증권시장을 교란한 때에는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07조 본법 제78조 제②관을 위반하여 증권거래행위 중에 허위설명 혹은 정보를 오도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고 3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국가기관 종사자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제208조 ① 본법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이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타인 계좌를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3만 원에 미달한 때에는 3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 혹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경고하고 3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증권회사가 전관 규정의 위법행위를 위해 자기 혹은 타인의 증권계좌를 대여한 때에는 전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외에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의 임명자격이나 증권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209조 증권회사가 본법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를 차용하거나 개인 명의로 증권을 자기매매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30만 원에 미달한 때에는 30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이 중한 때에는 증권의 자기매매에 관한 영업허가를 정지

혹은 취소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경고하고 임명자격 혹은 증권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하고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0조 증권회사가 고객의 위임에 위배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거래사항을 처리하거나 고객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반하여 거래 이외의 기타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객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211조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구가 고객의 자금이나 증권을 유용한 경우 혹은 고객의 위임없이 함부로 고객을 위한 증권매매를 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1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이 중한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임명자격 혹은 증권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2조 증권회사가 위탁매매를 취급함에 있어 고객의 일임을 받아 증권을 매매하거나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증권매매의 수익(보장)이나 증권매매의 손실 배상을 승낙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과 동시에 영업허가를 정지 혹은 취소할 수 있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임명자격이나 증권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3조 인수인이 본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상장회사 인수의 공고, 인수청약의 제시, 상장회사 인수보고서의 제출 등을 하거나 함부로 인수청약을 변경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인수인은 시정조치 전에는 그 인수하거나 협의 또는 기타 행동일치의 목계로써 타인과 공동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도 경고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4조 인수인 혹은 인수인의 지배주주가 상장회사 인수를 이용하여 피인수 회사 및 그 주주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정상이 중한 때에는 1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피인수 회사 및 그 주주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도 경고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5조 증권회사 및 그 종사자가 본법 규정에 위반하여 사적으로 고객의 위탁을 받아 증권을 매매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경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10만원에 미달한 때에는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6조 증권회사가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 없이 비상장회사 증권을 거래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7조 증권회사 설립 후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 개시 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정지한 때에는 회사 등록기관이 그 회사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제218조 ① 증권회사가 본법 제1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지점 조직을 설립, 인수, 취소하거나, 합병, 분할, 영업정지, 해산, 파산 혹은 국외에서의 증권영업기구의 설립, 인수,

주식 지분 참여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1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증권회사가 본법 제1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에 대하여는 경고하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9조 증권회사가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증권영업을 영위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30만원에 미달한 때에는 3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이 중한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경고하고 임명자격이나 증권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하고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0조 증권회사가 그 증권 대리매매업무, 증권위탁발매업무, 증권 자기거래업무, 증권자산관리업무에 대하여 법에 따른 분리처리를 하지 않고 혼합처리를 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3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이 중한 때에는 해당부문 업무허가를 취소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경고하고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이 중한 때에는 임명자격 혹은 증권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한다.

제221조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을 사용하여 중요 사실을 속여 증권업무 허가를 부정하게 받아 낸 경우이거나, 증권회사가 증권거래 중에 심각한 위법행위를 하여 더 이상 영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업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제222조 ① 증권회사 혹은 그 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감독관리기구에 경영관리 정보와 자료를 제출,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제출, 보고한 경영정보 및 자료에 허위기재, 오도성 설명 혹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증권회사의 해당 업무허가를 정지 혹은 취소할 수 있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3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임명자격 혹은 증권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증권회사가 그 주주 혹은 주주의 관계자를 위하여 용자 혹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주주에게 책임이 있고 시정 요구에 따르기 전이면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그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그 보유한 회사 증권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23조 증권관련업무기구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거나 그 작성, 제출한 문서에 허위기재, 오도성 설명 혹은 중대 누락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영업수익을 몰수하며 증권관련업무허가를 정지 혹은 취소하고 영업수익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책임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증권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하며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4조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채를 발행, 위탁발매한 때에는 국무원 위임 부서에서 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25조 상장회사, 증권회사,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관련업무기구가 규정에 따라 관련 문서와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관련 문서와 자료를 은닉, 위조, 변조 혹은 훼손한 때에는 경고하고 3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6조 ①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함부로 증권등록결제기구를 설립한 때에는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단속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투자자문기구, 재무고문기구, 신용평가기구, 자산평가기구, 회계사무소가 승인 없이 함부로 증권관련업무에 종사할 경우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관련업무기구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업무규칙에 위반한 경우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이 중한 때에는 증권관련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제227조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 혹은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에서 아래 사항 중 하나가 있으면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 (1) 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증권발행, 증권회사의 설립 등 신청에 대하여 심사, 허가한 경우;
- (2) 규정에 위반하여 본법 제180조에 규정된 현장검사, 질문, 지급정지 혹은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3)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 기관 혹은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실시한 경우;
- (4) 기타 법에 의하지 아니한 직무수행행위를 한 경우.

제228조 증권감독관리기구 종사자와 발행 심사위원회 구성원이 본법에 규정된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유관 단체나 개인의 상업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229조 증권거래소가 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증권상장 신청에 대하여 심사, 동의한 경우 경고하고 영업수익을 몰수하며 영업수익액 상당액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직접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30조 증권감독관리기구 및 그 종사자가 법에 따라 감독검사, 조사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거절, 저지한 행위로서 폭력, 위협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治安管理處罰)을 한다.

제231조 본법 규정에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刑責)을 추궁한다.

제232조 본법 규정에 위반하여 민사배상책임, 과태료, 벌금의 납부를 부담하여야 하나 그 재산이 부족할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제233조 ①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그 정상이 중한 때에는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증권시장 출입금지(證券市場禁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판에서 말하는 시장출입금지 조치는 일정 기간에서 평생 동안 증권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을 맡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제234조 본법에 의하여 징수한 과태료와 몰수한 위법소득은 전부 국고에 납입된다.

제235조 당사자가 증권감독관리기구나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의 처벌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불복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법에 따라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2 장 부 칙

제236조 ① 본법 시행 전에 행정법규에 의하여 승인되어 증권거래소에 상장 거래된 증권은 계속하여 법에 따른 거래가 된다.

② 본법 시행 전에 행정법규와 국무원 금융행정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설립 승인된 증권영업기구로서 본법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본법 규정에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237조 발행인이 주식, 회사채의 공개발행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규정에 따라 심사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38조 국내 기업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증권을 해외 발행하거나 그 증권을 해외에 상장 거래하려면 반드시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로부터 국무원이 정한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9조 국내 회사 주식의 외환에 의한 청약 혹은 거래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240조 본법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 이 법률을 번역함에 있어 고유명사가 아닌 한 우리나라 법률 용어로 의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원문을 ()에 넣었다.

1) 원문에는 해당 표시가 없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나라 법률 구성 형식에 준하여 각 관(款)의 앞에 ①, ② 등의 표시를 붙였다. 한편 중국의 법률을 비롯하여 문서 제목 앞에 붙이는 명칭 계서는 장(章), 절(節), 조(條), 관(款), 항(項) 순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관(款)이 생략된 경우와 차이가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17조 제2항은 “지배주주라 함은 그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 자본총액의 50% 이상인 경우 혹은 주식 지분이 주식회사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출자액 혹은 보유 주식 지분이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출자액 혹은 그 보유지분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17조 제3항은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라 함은 회사의 주주가 아니면서 투자관계 혹은 협의 기타 행동일치의 목계로써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17조 제1항은 “고위관리임원이라 함은 회사의 사장(經理), 부사장(副經理), 재무책임자(財務負責人), 상장회사 이사회 간사(秘書)와 회사 정관에 서 규정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47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이 될 수 없다. (1)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2) 독직, 수뢰, 재산횡령, 재산유용 혹은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 파괴의 죄로 형벌을 집행받고 그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로 정치권리를 박탈당하여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파산 청산을 맡은 회사, 기업의 이사 혹은 공장장, 사장이 당해 회사, 기업의 파산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이 있고 당해 회사, 기업이 파산 청산 완결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법행위로 영업허가증을 박탈당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회사, 기업의 대표자를 맡았고 개인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사 혹은 기업의 영업허가증 박탈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적으로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현재 이행기일이 도과하고도 미상환한 경우

② 회사가 전관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 감사를 선임 혹은 임명하거나 고위관리임원을 임명하면 그 선임, 임명은 무효이다.

③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이 재직기간 중에 본조 ①관에서 열거한 사정이 발생하면 회사는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17조 제4항은 “(관련)관계라 함은 회사 지배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과 그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하는 기업 사이의 관계 및 기업이익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말한다. 다만 국가가 지배하는 기업간에는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정돈(整頓)이란 기업의 상급 주무부서가 기업파산법에 기하여 기업의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취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로서 정돈절차는 화의절차의 전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중국의 독창적 제도이다.

8) 중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제2조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공안전을 방해하며 국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사재산을 침범한 사람은 ‘형법’에 규정한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하기에 미달하면 치안관리처벌을 하여야 하며 본법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는 치안관리처벌의 종류로 경고, 1元 이상 200元 이하의 과태료, 1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등 3종을 규정하고 있다.

9) 중국 형법 제117조는 “금융, 외환, 금은, 공상관리법규에 위반하거나 투기사범으로서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역(拘役)에 처하고, 벌금이나 재산몰수를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